

경의선 책거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21-129
번 호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 이유

출판 산업의 발전과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해 조성된 경의선 책거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경의선 책거리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제104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3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2) 추진 필요성

- 책이 융합된 새로운 창조적 복합문화공간인 경의선 책거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공간 및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 민간의 창의성과 참신성, 유연성 통한 사업 활성화 도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경의선 책거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 1) 경의선 책거리 관리 및 운영
- 2) 대·중·소형 부스(9개동) 관리 및 운영
- 3) 경의선 책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 4) 경의선 책거리를 거점으로 하는 도서 관련 기획 사업 추진
- 5) 시설물 및 장비(비품) 관리
-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35길 50-4 일대
- 2) 규 모 : 면적 6,411㎡, 연장 250m, 장폭 39m · 단폭 24m
- 3) 지원시설 : 부스 9개동 및 운영사무소, 야외시설 등

구 분	수량 · 규모	명칭 · 용도	
기본부스(대)	1동(113.33㎡)	문화산책 : 기획 전시(갤러리)	
기본부스(중)	2동(52.27㎡)	아동 · 문학산책	도서 전시·판매
기본부스(소)	6동(25.29㎡)	여행 · 예술 · 미래 · 창작 · 인문 · 테마산책	
와우교 하부 · 책거리조형물	165.28㎡	책거리 역사, 와우교 포토존, 책 조형물 등	
운영사무실 · 다목적홀	운영사무실(40.96㎡)	책거리 관리 및 운영 사무실	
	다목적홀(91.20㎡)	회의실, 강연 등 다목적 활용 공간	
야외광장	책거리 광장	공연 및 행사 진행 등	

4)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 2022. 4. 1. ~ 2024. 12. 31. (2년 9개월)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年 500백만원

항	목	내용	예산액 (천원)
인건비	인건비	기본급, 수당, 4대보험 등	188,216
운영비	시설비	부스, 인테리어 보수, 조형물 내부재료 교체, 안내표시대, 외부간판 등	9,840
	일반관리비	공과금, 비품구입, 보험료 등	70,548
	코로나19대응비	방역물품 구입, 안내문 제작 등	3,500
	회의/심사비	운영위원회, 부스심사비 등	2,000
홍보비	홍보비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키오스크, 이벤트 등	25,096
행사비	프로그램비	축제, 책학교, 저자가 있는 날, 협업사업, 책지기, 책친구 등	200,800

※ 수탁자 선정 후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음.

자. 추진 일정

- 1) 공개모집 공고 : 2021. 12. ~ 2022. 1. (20일 이상)
- 2) 신청서 접수 : 2022. 1. 21. ~ 1. 27. (5일)
- 3) 선정 심사 : 2022. 2. 9. ~ 2. 15. (기간 중 1일)
- 4) 심사결과 발표 : 2022. 2월 중
- 5) 협약 체결 : 2022. 3월 중
- 6) 위탁 운영 : 2022. 4. 1. ~ 2024. 12. 31. (2년 9개월)

※ 추진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2.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6.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7. 문화예술 행사·축제 및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9.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민간위탁 분야의 전임장사 이상의 관련 학과 교수
3. 구의회 의원 2명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